

의안번호	2204030
의 퇴 인	김태년의원
회 답 일	2024.11.20.
추계번호	24B3779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u>2년</u> 이 되는 날까지로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단서 신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함. <u>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지원 신청인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함(제1항)</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활동계획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 및 사후관리를 의미하기 때문에¹⁾,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가 받는 수급액과 취업지원서비스의 기간 간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연장할 경우 상담사 1인당 상시 관리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인건비 및 기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운영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곤란
2	안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단서 신설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현행법은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수급자가 수급자격에 대한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과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에 대해 구직자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구직촉진수당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1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임
 - 개정안은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도록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임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지급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표 1] 구직촉진수당 지급 현황: 2021~2023년

(단위: 원)			
구분	2021	2022	2023
월단가	500,000	500,000	500,000
인정인원(명)	340,649	219,527	228,929
15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자 수(명)	211,371	156,492	169,471
15세 이상 34세 이하 IAP 수렴률(%)	98	98	99
15세 이상 34세 이하 지급횟수(회)	5.3	5.1	5.2

자료: 고용노동부

1) 고용노동부, 「2024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p144.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하나,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에 따른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 참고자료

- 2021년 1월 도입된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요건²⁾을 충족하는 자에게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지급횟수는 평균 5.2회이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횟수 증가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급횟수와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지급인원은 연도별 인정인원에 IAP수립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사업 시행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21년을 제외한 2022~2023년 평균치를 적용하여 추계
 - 현재 구직자촉진수당에 포함된 가족수당(월 10~40만원)은 고려하지 않고 산출하였으며, 향후 가족수당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향후 지급인원, 연도별 인정인원, IAP수립률 등이 변화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2023년 수준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지급횟수) 개정안에 따라 수급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수급기간은 기존 사용 행태를 고려하여 산출
 - 기존 사용자의 사용행태를 고려하여 현행 최대 수급횟수(6개월) 대비 2023년 기준 실제 수급 횟수(5.2회)를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급횟수 증가분(6개월)에 적용하여 산출
 - (지원단가) 현행법에 따른 지원단가는 월 50만원을 적용하여 산출
- 개정안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해 수급자격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에 4,174억원, 2030년 4,174억원 등으로 추계됨

2)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취업경험 미충족자는 선발형으로 지원),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저소득 구직자(15~34세 청년 중위소득 120%, 재산 5억 이하) 등

[부표]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정인원(A, 명)	162,982	162,982	162,982	162,982	162,982
IAP 수립률(B, %)	98.5%	98.5%	98.5%	98.5%	98.5%
평균지급횟수(C, 개월)	5.2	5.2	5.2	5.2	5.2
단가(D, 백만원)	0.5	0.5	0.5	0.5	0.5
구직촉진수당 (E=A×B×C×D)	4,174	4,174	4,174	4,174	4,174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그러나 수급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제 수급횟수가 기존 수급현황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참고자료에서의 추가재정소요는 이러한 행태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은 매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고용정책심의회 결정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